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0. 30 선고 2015가단20122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종회

피 고 1. B

2. C

변론 종결 2015. 9. 18.

판결 선고 2015. 10.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이 사건소장 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8. 3.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17세 후손인 E 및 F의 21세손인 G를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그 후손들 사이에 구성된 소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이다.

나.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H이 1973. 1. 10. 매매를 원인으로 1973. 7.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 B이 2008. 7.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7.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H이 1973. 1. 8. 매매를 원인으로 1973. 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 C이 2008. 7.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충남 당진군 I 임야 1,587㎡는 1971. 8. 16. H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1983. 10. 7. 분할로 면적이 1,370㎡가 되었으며, 이후 1993. 3. 16. J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충남 당진군 I 임야(이하 'I 임야'라 한다)는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로 명의신탁하고 있었는데, H이 구입한 이 사건 1토지와 교환하기로 하고, 1987. 11. 29. 시조인 G의 묘 및 선대의 묘를 이장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2부동산은 종산인 I 임야의 위토로 종원들이 모금한 돈으로 구입하여 총무인 H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의 해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1부동산의, 피고 C은 이 사건 2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4273 판결 등 참조). 어느 토지가 종중과 관계있는 특정 분묘의 설치를 위한 묘산 또는 그 제사비용의 마련을 위한 위토 등으로 제공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종중이 직접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종중재산으로 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특별히 개인 소유의 토지를 묘산이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지 묘산 또는 위토라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그를 종중의 소유로 단정할수 없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2729 판결 참조).

2) I 임야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 임야의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1918. 5. 22. K 명의로 되어 있다가 L, H 명의로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들의 증조부인 M와 K, 피고들의 조부인 N과 L이 동일인이라고 하여도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M 명의로 I 임야를 사정받거나 취득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I 임야가 명의신탁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I 임야의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갑 제7, 8, 11, 13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1토지와 I 임야의 교환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2토지가 원고가 H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2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는 H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토로 사용한 경우라도 H 개인 소유의 토지를 위토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H이 생존한 동안에도 종종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록이 가능하였음에도 수십년간 종종 명의로 소유 명의의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원고는 H와 사이에 I 임야와 이 사건 1부동산을 교환하고 1988. 3. 31. 이 사건 각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이 사건 1부동산에 선대들의 분묘를 이장하고 다른 종원들의 분묘도 이장하여 종산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고, 이 사건 2부동산은 P에게 임대하였으며, 이후 인근에 있는 종원들이 돌보고 있으므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갑 제5 내지 11,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O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1토지에 설치된 조상들의 분묘 앞에서 시제를 지냈다는 점 이외에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점유·관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진우, 별 지, 1. 충청남도 당진시 임야 2678m, 2. 충청남도 예산군 전 1415m²